

광업권설정 허가에 관한 자료

[illegible]

비고

1. "구분"란 "설정" 또는 "기간연장"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"광업권의 종류"란 "탐사권" 또는 "채굴권"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, "탐사권"과 "채굴권"을 함께 설정(기간연장)하는 경우에는 "탐사권 및 채굴권"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